금호2차 W-park 진흥 더블파크

금호2차 진흥 더블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 10749호 (2007.5.1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산 87-1 외 114필지**
□ **대지면적 : 28,883㎡**　　　□ **공급규모 : 아파트 9층 ~ 15층 7개동 33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금액

(단위 : ㎡)

구 분	주택형별	세대별 계약 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층 수
		세대별 공급 면적			기타공용면적	합계			
		전용면적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165.2857	136.2350	29.0507	165.2857	63.7113	228.9970	85.9575	330	15층

(단위 : 천원)

주택형(㎡)	층별	세대수	세대별 분양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가격	건물가격	계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시	'07.8.10.	'07.11.10.	'08.2.10.	'08.5.10.	'08.9.10.	'08.12.10.	'09.3.10.	입주지정일
165.2857㎡	1층	23	155,119	223,681	378,800	18,940	18,940	37,880	37,880	37,880	37,880	37,880	37,880	113,640
	2층	25	159,214	229,586	388,800	19,440	19,440	38,880	38,880	38,880	38,880	38,880	38,880	116,640
	기준층	256	163,718	236,082	399,800	19,990	19,990	39,980	39,980	39,980	39,980	39,980	39,970	119,940
	최상층	26	172,318	248,482	420,800	21,040	21,040	42,080	42,080	42,080	42,080	42,080	42,080	126,24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층별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 공유지분에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3자녀 특별공급(165.2857㎡, 10세대)
- 신청자격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07년 5월 18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단,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증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특별공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1부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규정에 정한 「우선순위 배정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부적격처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2. 일반공급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2007년 5월 18일)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자 (세대주인 경우에는 만20세 미만인자를 포함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 금액으로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입주자 저축의 통장은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함(2순위 청약은 가능함)

3.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청 약 자 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장소 /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3자녀 특별공급	전주택형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광주광역시 거주자	2007. 5.23	접수장소 : 당사 견본주택 접수시간 : 09:30 ~ 16:30	일시: 2007.5.25 (14:00) 장소: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1순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 청약기능) 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②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③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분				
	2순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이 불가한 분				
	3순위	전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경과기간 및 요건

- 평형변경 조건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회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으로 변경하여야 함.
  2)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기 예치금액 변경한 자는 변경일)로부터 2년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평형변경한 자 신청요건
  1)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2)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평형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 변경전 평형만 신청가능)
  3)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4)94. 8.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5)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접수방법

-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같은날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 · 2순위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당사 견본주택에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사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구분		구 비 서 류
민영주택	본 인 (배우자포함) 신청시	• 민영주택공급 신청서(1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견본주택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제1 · 2순위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예금인장(1 ·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주민등록등 · 초본, 의료보험증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청약자 본인명의 통장사본(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격 확인 서류(거주지,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주민등록 등 · 초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세대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장애인 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 신청금	165.2857㎡	100만원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일 영업일(2007년 5년 26일)이후 10:00 ~ 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견본주택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인감도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 인감도장(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제3순위 신청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공 통	• 각 주택형별 신청자 및 입회인의 입회하에 각 순위별로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동 · 호수를 결정함. • 입주자 모집결과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당사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정당당첨자) : 2007. 5. 30(수) ~ 2007. 6. 1(금) (3일간, 9:3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실태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지정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신한은행	100 – 023 – 039355	(주)에스앤에스비전 외 1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바람.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 비 서 류
공 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 계약금(가능한 한 광주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등본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1순위 당첨자 중 해당 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손, 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계약조건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단지내 명칭 및 동 ·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를 1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다락공간은 해당 입주자가 사용하는데 전세대가 동의하며 해당 입주자 개인 소유면적으로는 등기부상 등재할 수 없음.
- 계약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름.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1항)

■ 계약자 대출안내

구 분	신 한 은 행	새 마 을 금 고
대출한도	분양가의 50% 이내	분양가의 10% 이내
대출금리	5.61% (변동금리)	6.91% (변동금리)

- 대출한도는 신한은행 대출 신청 분 및 새마을금고 대출 신청분을 합하여 분양가의 60% 범위 가능
- 상기 대출한도는 계약자의 대출자격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상담하시기 바람.
- 상기 대출이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금리로서 대출신청일에 가감될 수 있음.
- 상기 대출금 중 중도금 1차에서 중도금 3차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며, 계약금 2차 및 중도금 4차에서 중도금 6차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에서 이자를 대신납부하고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대납한 이자를 정산하여야 함. (단,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입주지정최초일 전일까지 임)

■ 입주자 사전점검

- 본 아파트의 입주자 점검방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입주자 사전점검 운용요령」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전에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임(정확한 사전점검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09년 7월 (정확한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부가세 포함, 단위 : 천원)

주택형(㎡)	구 분	위 치	발코니 공사비			비 고
			확장전(A)	확장후(B)	확장공사비(B-A)	
165.2857㎡	선택 1	거실, 주방/식당, 침실2, 침실3, 침실4, 부부욕실	13,338	24,998	11,660	침실 1 제외
	선택 2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부부욕실	15,183	27,653	12,470	전체 확장

■ 부대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 유의사항

- 광주광역시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공고 제2003-258호(2003.11.17)]되어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 2(전매행위제한 기간 및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에 의거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행위가 제한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한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세대주의 사망,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 · 비속으로 세대주 변경된 경우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3순위자 포함)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 본인 또는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을 금융기관에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은 신청자 성명을 인지 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금융기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자 제외)는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하기로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되었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동,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도로변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인접한 일부동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와 관련된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의거 적용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전 · 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기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시행사가 본 아파트 등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시공사와 시공사가 지정하는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의없이 동의함.
- 입주자에 대한 융자는 계약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에 의거한 허용 범위이내에서 사업주체(대리인)가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 인 · 허가 사항을 추진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운동시설 등)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섀시,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홍보 카탈로그에 표기된 각종 관내시설(학교, 도로, 관청, 철도, 공원, 상하수도, 기타 혐오시설 포함)은 허가 관청 및 국가 시책에 따라 신설,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단지모형 및 조감도와는 일부 다르게 조경 및 시설물(주차장 환기구, 옹벽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음 및 미관상 하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전 홍보물 전단지 및 카탈로그에 명시한 내용이 공사전, 후에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산책로, 도로(보행자 및 차도)보다 낮아 외부에서 주택 실내가 보일수도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룸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사업계획상 근린생활시설과 관련 향후 부지경계 및 관리주체, 주차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및 계약 전 본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지연에 대하여 사업주체(대리인)가 책임지지 않음.
-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 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층 및 최상층 세대는 일부시설을 별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타 세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1층 및 최상층 세대는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단지 전체 미관에 저촉되지 않는 등 타 세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내력벽 철거 또는 변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 에게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 분양보증 사항

(단위 : 천원)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 ~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	92,205,400	제 01222007-101-0002500호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 보증대상 제외사항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①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②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③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④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⑤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⑥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⑦ 보증채권자가 분양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⑧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⑨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⑩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⑪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⑫ 주 채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⑬ 입주자 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섀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된 금액
  ⑭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 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2) 보증회사가 주택분양 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단,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①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② 임시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시행사 및 시공사

- 시행사 : 주식회사 에스앤에스비전(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번호 : 광주 – 주택 2004 – 0011)
- 시공사 : 진흥기업주식회사(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번호 : 인천광역시 – 주택 2005 – 005)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원)	비 고
건축감리	(주) 지에이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265,737,000	V.A.T. 별도
전기감리	(주) 그룹원이엔지	335,600,000	V.A.T. 별도
소방 · 통신감리	(주) 대경기술단	65,000,000	V.A.T. 별도

■ 분양문의 : 062-352-9595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산87-13번지외 1필지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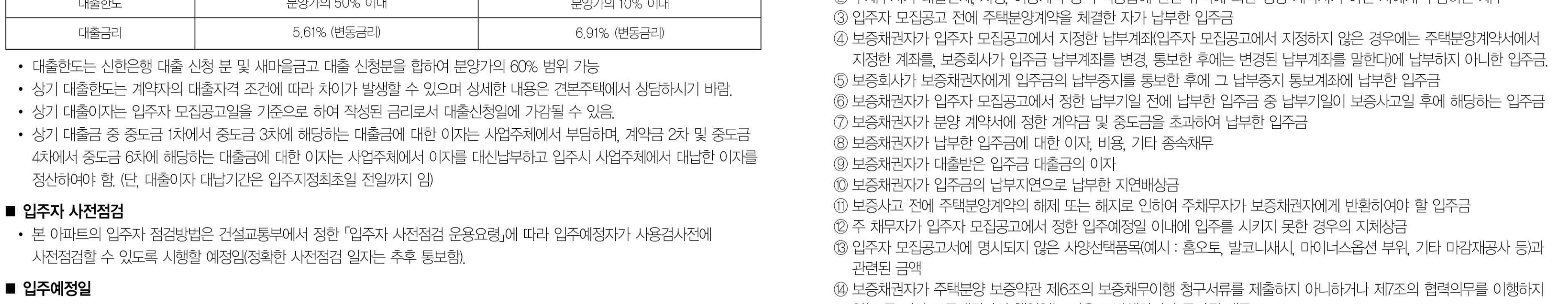

• 상기 그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 SNS VISION (주)에스앤에스비전　시공사 진흥기업

문의 352-9595